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채이배 / 이수정

목 차

요약

I. 분석목적

II. 분석대상 및 방법

III.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율 내용

1. 상증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2.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
3. 상법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IV. 기업집단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분포

V. 기업집단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회피

VI.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사례연구

1.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를 통한 회피 사례
2. 매각 또는 해산을 통한 회피 사례
3. 바람직한 해소 사례 -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SVN

VII.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현행 규율의 문제점
2. 규율의 개선방안

-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규율을 회피한 실증적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율을 위해 2011 년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 상법 도입, 2012 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2013 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도입됨
 - 과거 회사기회유용 또는 일감몰아주기가 있었거나, 현재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여 규제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31 개 기업집단의 130 개 계열사이며,
 - 이 중 현재 내부거래가 미미하여 규율대상이 아닌 24 개를 제외한 106 개가 과거 또는 현재 상증세법 상 과세, 공정거래법 상 규제 중 하나라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임
 - 이 106 개 중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지분 매각, 해산 등으로 규율을 회피한 회사가 28 개로 파악되며, 이 중 2 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규율 대상임

<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 및 회피 현황 >

규율 완전 회피	규율 대상	합계
26	80 (부분 회피 2개 포함)	106
24.53%	75.47%	100%

요 약

- 그나마 매각 또는 해산을 통해 지분을 해소하는 경우 대부분 지배주주들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어느 정도 바람직하나,
- 합병이나 분할 등은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변동 없이 규율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결과를 낳게 됨

<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의심 사례 28 개 및 해소사례 1 개 >

규율회피	회사명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19 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현대엠코, 현대위스코 STS로지스틱스,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 동현엔지니어링 CJ시스템즈 디케이에스앤드 케이지인터내셔널 티알엠(태광리얼코), 구, 티시스(태광시스템즈), 성광산업 서울도시산업,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알앤알건설
지분매각	현대글로벌비스

6개	CJGLS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디케이유엔씨
해산 3개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문제해소 1개	신세계에스브이엔 (감자)

▣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합병 등 사업조정으로 내부거래를 희석시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중 기준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둘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의 1/2, 중견·중소기업 50%)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함

또한, 지분율에 대해서도 한계지분율(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 10%)를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셋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이 사익편취 및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중견·중소기업 소유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함

넷째,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일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판단할 때 간접지분율을 포함하여야 함

둘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는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정해야 함

셋째,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과 동일하게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및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 규정하여야 함

넷째, 규제 적용 예외사항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함

효율성 증대는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소재 등의 거래만 허용하되, 수직계열화된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귀속되는지 않을 경우에만 효율성 증대를 인정해야 함

보안성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만 보안성 요건을 인정해야 함

긴급성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수행할 경우, 시간상 지연으로 인하여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성을 인정해야 함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사례

채이배·회계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수정·경제개혁연구소

I. 보고서의 목적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 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문제성 주식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 년 4 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있는 38 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444 개 중 회사기회유용 및 지원성거래(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는 총 132 개사로 나타났다.¹ 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말 기준으로 이들 회사의 주주인 지배주주 일가 233 명은 총 1 조 5,646 억원을 투자하였고, 순 부의 증가액은 13 조 8,928 억원으로 단순수익률은 887.92%에 이른다. 회사기회유용의 경우 순 부의 증가액은 10 조 4,299 억원이며 수익률은 1,256%,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순부의 증가액은 3 조 4628 억원 수익률은 471%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가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공론화한 2006 년 이후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율을 위해 2011 년 회사기회유용을 금지하는 상법개정, 2012 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2013 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 마련되었다.

이 중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2015 년 2 월 14 일 이후 내부거래에 대해서 규제가 적용된다. 이미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이 크게 수용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비판 뿐 아니라, 규제 도입 이전인 2010 년부터 이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계의 작업이 있다는 지적이

¹ 경제개혁리포트 2012-10 호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 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증세법 상 과세 회피 시도가 많으며,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역시 예외 규정에 의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실증적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 회사는 2014 년 4 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최근 수년간 연속으로 지정되어 공시자료 확보가 용이한 상위 50 위 이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이다. 이 중 공기업 및 지배주주가 개인이 아닌 기업집단²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분석대상은 31 개 기업집단이다.³

분석 방법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통해 계열사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고, 각 회사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행위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현행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의 지분구조를 파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계열회사(이하 과세대상) 및 공정거래법 부당이익제공의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이하 규제대상) 파악
- 2) 과세대상 및 규제대상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
- 3)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추구의 규모(증여의제이익) 파악
- 4) 현행 제도의 적용을 통한 규제 효과 분석 및 미비점 파악
- 5)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분석은 공시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서 적용여부를

² 포스코, 농협,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한국지엠, 홈플러스, 케이티앤지, 코닝정밀소재

³ 한라그룹의 경우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규율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주회사 전환과정이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판단하였다.

1) 상증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본 연구의 증여의제이익은 회사의 세무조정 내용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세무상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지 못하고, 회계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를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특수관계인과의 매출거래비율(내부거래 비중)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의 국내계열회사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간접출자의 경우, 간접지분을 파악이 용이한 경우는 계산과정에 반영하였으나, 출자 단계를 2 번 이상 거치는 경우, 간접지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생략하였고, 매출액에 대한 간접출자법인의 기여분도 고려하지 않았다.

2)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금지의 판단

상당히 유리한 조건 중 가격요건은 판단이 불가하므로 분석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사업기회 제공을 판단하였다. 내부거래 비중은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방법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업기회(회사기회) 제공은 사업의 연관성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III.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율 내용⁴

현재 시행 중인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2011 년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세법은 증여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증여이익} = \text{세무상 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비율} -$$

⁴ 본 보고서에서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과세”로 표현하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도를 “규제”로 표현하고, 이를 통틀어 규율이라고 표현하였다.

정상거래비율 $\times 1/2$ \times (지분율 - 한계지분율)

- * 정상거래비율은 30%, 단, 중소·중견기업은 50%이며, 1/2 곱하지 않음
- * 지분율은 간접지분율을 포함함
- * 특수관계법인과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매출액(과세제외 매출액) 은
중소기업간 매출액, 50% 이상 출자회사 매출액 전액, 30% 이상 출자회사
매출액 \times 출자비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매출액, 수출목적 매출액 등
- * 한계지분율 3%, 단, 중소·중견기업은 10%로 함

증여세 = 증여이익 \times 증여세율(누진세율, 10% ~ 50%)

2.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

2013 년 6 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분요건과 상당성 요건(가격요건 및 물량요건), 사업기회유용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분요건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비상장회사 20% 이상, 상장회사 30% 이상인 계열회사 (간접지분 제외)
2. 상당성에 대한 요건
 - 1) 가격요건(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가격 차이는 정상가격보다 7% 미만이고 거래금액 200 억원 미만이면 제외
 - 2) 물량요건(상당한 규모 거래) : 현저한 규모는 거래금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총액의 12%미만이고 200 억원 미만이면 제외
 - 3) 사업기회제공 요건 : 사업과 밀접한 관계,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
3. 예외인정 :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이 있는 경우
 - 1) 효율성 증대 : 전후방 연관관계 높은 계열회사, 산업연관성 높은 계열회사, 전문화된 계열회사, 장기간 거래로 협업체계 구축된 계열회사, 시업 연관성 및 신뢰성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봄
 -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시설구축 및 연구개발 등에 있어 유용한 기술

또는 거래에 관한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

4. 규정 위반 시 : 과징금 및 형사처벌

3. 상법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2012 년 4 월부터 시행된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와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의 도입이었다. 이 조항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전적인 규제의 의미가 있다. 사전적인 규제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있는 사후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주주대표소송이다. 하지만, 소수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추후 개정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상법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제 4 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② 제 1 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 3 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IV. 기업집단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분포

분석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중 지배주주 일가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개혁연구소가 회사기회유용 또는 일감몰아주기가 있었거나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31 개 기업집단의 130 개 계열사이다. 이들 회사는 현재 지배주주 일가 소유지분이 없더라도 과거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뒤 지분을 정리한 사례, 또는 해당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손실을 입은 뒤 매각한 사례 등을 포함한 것이다.

130 개 회사 중 현재 상증세법 상 과세, 공정거래법 규제 중 하나라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78 개사로 나타났다. 나머지 52 개는 내부거래가 미미하여 규율대상이 아니었거나(25 개), 지분 매각, 내부거래 축소, 분할, 합병, 해산 등으로 규율을 회피한 것(27 개)으로 파악된다.

분석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물량요건과 기회유용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중복 적용되거나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표 2>의 문제 사례를 과세, 물량요건 규제, 기회유용 규제의 3 가지로 구분하였다.

규율대상으로 판단되는 78 개 회사 중 중복 사례를 포함하여 규율 적용이 가능한 건수는 총 136 건이었다. 개별 규율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54 건, 공정거래법 상 물량요건 규제와 기회유용 규제에 해당되는 사례는 각각 57 건, 25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 세 가지 모두를 적용받는 회사는 9 개로 현대머티리얼, SK C&C, 한화에스앤씨, KCC자원개발, 엠프론티어, 엠케이테크놀로지, 티브로드홀딩스, 티시스, 세광패션으로 나타났다. 요건이 유사한 상증세법상 과세와 물량요건 규제를 동시에 받는 회사는 41 건이었으며, 물량요건과 회사기회유용 규제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즉 지배주주 일가가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확보 후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로 지배주주가 수익을 얻는 경우는 15 건이었다.

<표 1>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 현황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건)		
과세	물량요건 규제	기회유용 규제
54	57	25
41 건 중복		-
-	15 건 중복	
9 건 중복		
136 건		

위와 같이 규율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규율의 실효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즉 과세는 실제 얻는 이익에 비해서 부담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공정거래법 규제는 효율성 증대 등을 이유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실효성이 없다. 결국, 현행 규율은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오히려 법적으로 용인해 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VIII. 기업집단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회피

한편 규율의 허점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을 회피할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특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2011 년 도입되어 2012 년부터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전후하여 규율 회피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대상 130 개 회사 중 내부거래가 미미하여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24 개를 제외한 105 개의 규율대상 중에서 2011 년 상증세법 상 과세가 도입된 후 총 28 개 회사가 합병, 지분매각, 해산, 내부거래 축소, 분할 등으로 규율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 건은 모든 규율을 회피하게 되었고, 2 건(현대글로벌비스, CJ시스템즈)은 일부 규율만 회피하여 여전히 규율대상이다.

<표 2>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및 회피 현황

규율 완전 회피	규율 대상	합계
26	80 (부분 회피 2 개 포함)	106
24.53%	75.47%	100%

그나마 매각 또는 해산을 통해 지분을 해소하는 경우 대부분 지배주주들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어느 정도 바람직하나, 합병이나 분할 등은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변동 없이 규율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규율회피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한다.

<표 3>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의심 사례 28 개 및 해소사례 1 개

규율회피	회사명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19 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현대엠코, 현대위스코 STS로지스틱스,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 동현엔지니어링 CJ시스템즈 디케이에스앤드 케이지인터내셔널 티알엠(태광리얼코), 구, 티시스(태광시스템즈), 성광산업 서울도시산업,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알앤알건설
지분매각 6 개	현대글로벌비스 CJGLS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디케이유엔씨
해산 3 개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문제해소 1 개	신세계에스브이엔 (유상감자)

VI.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사례연구⁵

1.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를 통한 회피 사례

⁵ 사례에서 보여주는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의제약은 계산의 편의 상 간접출자법인의 기여분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였다. 따라서, 일감몰아주 과세의 증여의제약이 크게 나올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설명을 덧붙였다.

1) 삼성그룹 소속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분할, 영업양수도)

회사의 개요 -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는 과거 놀이공원 경영 외에 골프장 운영, 빌딩관리, 급식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2013 년 12 월 구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은 분할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신설하였다. 2014 년 1 월에는 건물관리사업 부분을 에스원에 매각하고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다.

소유구조 -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소유구조상 최상위 회사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 중이다.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용 등 지배주주 3 세에 대한 지배권 승계는 사실상 1996 년 10 월 제일모직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존 주주인 계열사들이 실권하고 이재용 등 자녀 4 명이 인수하며 이루어졌다.⁶ 현재 이재용은 제일모직 지분 25.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지배주주 일가 전체의 지분이 45.56%에 이른다.

<표 4> [제일모직의 지분추이] (단위: 주, %)

	1999 ~ 현재	
	주식수	지분율
이재용	627,390	25.10
이건희	93,068	3.72
이부진	209,129	8.37
이서현	209,129	8.37

⁶ 삼성에버랜드의 소유구조는 이재용 등 자녀가 1997 년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저가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녀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의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1, 2 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하여도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 도 4949 전원합의체 판결(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하지만,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인 제일모직이 1997 년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고 실권하여 손해를 입고, 당시 실권하기로 의사결정한 이사를 상대로 제일모직 소수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주대표소송 2 심판결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구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 나 2372 판결)

내부거래 현황 - 삼성에버랜드의 매출은 놀이동산 등 레저사업 보다는 자산(건물)관리 및 건설, 단체급식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레저사업 부문은 2005 년 3 천억원의 매출 달성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나, 자산관리 및 건설 부문과 단체급식 부문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16 년간의 매출을 보면 1999 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5 년 평균 4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거래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2012 년 삼성에버랜드의 주요 영위업종별 내부거래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 5> [제일모직의 영위업종별 주요 내부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업종별 주요 내부거래 금액	2013	2012
a. 건설 및 건물관리 사업	754,607	945,642
b. 급식 및 식자재유통 사업	481,952	387,818
c. 레저(골프장 및 스키장) 사업	26,281	19,599
주요 내부거래 금액 합계(a+b+c)	1,262,840	1,353,059

* 자료 :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및 감사보고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레저사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작지만, 건설 및 건물관리사업과 급식 및 식자재유통 부문에서는 내부거래 금액이 크고 비중이 높다.

<표 6> [제일모직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1,299,533	1,391,808	1,196,458
총매출	3,018,454	3,000,682	2,687,237
비중	43.05	46.38	44.52
영업이익	108,107	134,127	208,099

하지만, 2013 년 12 월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건물관리사업을 매각하였으며,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패션사업부를 인수하였으므로 2014 년부터의 내부거래 비중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업부문의 내부거래가 지속되며, 그 금액 및 내부거래

⁷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중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공시를 영위업종별로 재정리한 것이며, 위의 삼성에버랜드의 영업실적의 내부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주요하지 않은 상품·용역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제일모직이 사업부문을 분할, 양수, 양도하기 전 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 모두 지분을 3%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다. 2013 년말 기준으로 이재용의 증여의제이익은 52.3 억원, 이부진과 이서현은 12.7 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업부문을 조정한 후 내부거래 비중은 현격하게 낮아지므로 이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간접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므로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삼성웰스토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당할 것이다. 2013 년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의 영업이익과 매출액, 내부거래 비중을 고려할 때, 이재용의 증여의제이익은 33.5 억원, 이부진과 이서현은 8.1 억원으로 추정된다. 즉, 지배주주 일가의 부에는 변화는 없으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상당히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상장회사인 제일모직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가 200 억원 이상은 될 것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 증대 등을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간접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삼성웰스토리는 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회사의 개요 -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는 1993 년 삼성전자에서 분사 설립되어 통신망 구축, 홈네트워크설치, 디지털도어락 및 ETC 단말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였다. 2013 년 12 월 삼성SDS에 흡수합병 되었다.

지배주주 지분 확보과정 - 이재용은 임원 박명경과 함께 1996 년 발행된 전환사채를 주당 5,000 원, 총 20 억원 인수하였고 이를 전환하여 50.67% 지분을 확보하였다. 피합병 전까지 보유 지분은 45.90%이었다.

<표 7> [삼성SNS의 지분추이] (단위: 주, %)

	2010 ~ 피합병 전	
	주식수	지분율
이재용	5,066,690	45.69

<표 8> [합병 후 삼성SDS의 지분추이] (단위: 주, %)

	2013 합병 이후		2011~201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재용	8,704,312	11.25	6,364,457	8.81
이부진	3,018,859	3.90	3,018,859	4.18
이서현	3,018,859	3.90	3,018,859	4.18

내부거래 현황 - 서울통신기술의 최근 3 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9> [삼성SNS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6*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87,135	283,373	222,970
총매출	205,621	509,477	499,505
비중	42.38	55.62	44.64
영업이익	20,338	54,086	21,322

* 2013 년 12 월 합병하였으므로, 2013 년 6 월 반기보고서의 내부거래까지 확인됨.

아래는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에 대한 추정이다. 삼성SDS의 매출규모가 삼성SNS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합병 후, 삼성SDS의 내부거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다.

<표 10>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 내부거래 추정] (단위: 백만 원, %)

	삼성SNS	삼성SDS	합계
특수관계자	283,373	3,309,575	3,592,948
총매출	509,477	4,632,857	5,142,334
비중	55.62	71.44	69.87
영업이익	54,086	328,654	382,740

* 삼성SNS는 2012 년 금액을 기준으로, 삼성SDS는 2013 년 금액 기준으로 추정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합병 전 이재용 지분율이 3%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며, 2012 년말

기준으로 이재용의 증여의제이익은 73.2 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삼성SDS와 합병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증여의제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2013 년 기준으로 삼성SDS에 대한 이재용의 증여의제이익은 84.0 억원, 이부진과 이서현은 17.0 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삼성SNS 합병으로 이재용의 지분율만 상승하고, 이부진과 이서현의 지분율은 하락하게 되었다. 합병회사를 대상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추정하면, 이재용은 135.1 억원, 이부진과 이서현은 14.7 억원이다. 따라서, 이재용이 삼성SNS의 증여의제이익이 73.2 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두 회사 합병 전의 합계 157.2 억원 보다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비상장회사인 삼성SNS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가 평균 40% 후반대이므로 규제대상이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3)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현대엠코

회사의 개요 - 현대엠코는 2002 년 설립, 현대차그룹의 본사건물, 공장 등 의 건설로 출발하여 아파트 건설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2014 년 1 월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 되었다. 두 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를 흡수합병한 것은 정의선 등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회피하고, 추후 상장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배주주 지분 확보 과정 - 현대엠코는 설립 당시 현대글로벌비스 등 계열사들이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4 년 정의선이 현대글로벌비스로부터 25.06%의 지분을 주당 109,673 원(26,130 백만 원)에 매입했고, 2005 년 주당 5,000 원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11,340 백만 원)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보유 중이다. 합병 이후 정의선과 정몽구는 각각 11.72%, 4.68%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11> [현대엠코의 지분추이] (단위: 주, %)

	2005~2014		200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2,506,311	25.06	238,250	25.06

정몽구	1,000,000	10.00	95,060	10.00
-----	-----------	-------	--------	-------

<표 12>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추이] (단위: 주, %)

	2014 합병 이후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890,327	11.72
정몽구	355,234	4.68

내부거래 현황 - 현대엠코의 최근 3 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13> [현대엠코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1,470,850	1,758,778	1,024,042
총매출	2,766,784	2,874,244	1,812,407
비중	53.16	61.19	56.50
영업이익	216,071	187,329	105,820

<표 14>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정(2013 년)] (단위: 백만 원, %)

	현대엠코	현대엔지니어링	합계
특수관계자 매출*	1,470,850	123,961	1,497,206
총매출	2,766,784	2,616,187	5,382,971
비중	53.16	4.74	27.81
영업이익	216,071	265,455	481,526

* 각각의 회사의 특수관계자 매출은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 내용이며, 합계금액은 2014 년 5 월말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의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상품·용역거래 현황이 합산하여 기재한 금액이다. 감사보고서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작성기준이 상이하므로, 두 회사의 금액 합계가 공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현대엠코 합병 전 정몽구, 정의선 모두 지분율 3%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었다. 2013 년말 기준으로 정의선의 증여의제이익은 141.9 억원, 정몽구는 45.0 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합병회사를 기준으로 정몽구와 정의선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특히 내부거래 비중은 현격하게 낮아진다.

2013 년 말 금액기준으로 추정한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7.81%로 3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으로 정몽구, 정의선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비상장회사인 현대엠코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도 53.16%이므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 후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16.4%로 낮아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현대위스코

회사의 개요 - 현대위스코는 1974 년 설립된 차량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체이다. 1997 년 화의절차를 거쳐 2001 년 현대위아 등이 지분을 인수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회사가 되었다. 2014 년 11 월 현대위아가 현대위스코와 현대메티아를 흡수합병하였다. 정의선 등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회피하고, 추후 매각 등 이익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정의선은 2003 년 현대위아와 다이모스로부터 57.87%의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이 지분은 2014 년 11 월 합병시점까지 유지되었다.

<표 15> [현대위스코의 지분추이] (단위: 주, %)

	2003~2013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347,241	57.87

<표 16> [합병 후 현대위아의 지분추이] (단위: 주, %)

	2014.11. 합병 이후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531,095	1.95

내부거래 현황 - 현대위스코의 최근 3 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17> [현대위스코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405,064	386,104	348,803
총매출	613,567	562,314	501,849
비중	66.02	68.66	69.50
영업이익	21,901	16,785	15,388

<표 18>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정(2013 년)] (단위: 백만 원, %)

	현대위스코	현대위아	합계
특수관계자 매출	405,064	3,769,863	4,174,927
총매출	613,567	6,287,025	6,900,592
비중	66.02	59.96	60.50
영업이익	21,901	466,591	488,492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현대위스코 합병 전 정의선의 지분율이 3%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 역시 30%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었다. 2013 년말 기준으로 정의선의 증여의제이익은 47.8 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합병회사를 기준으로 정의선 지분율이 1.95%로 크게 감소하여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비상장회사인 현대위스코의 정의선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도 66.02%이므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위아와 합병 후 정의선의 지분율은 1.95%로 낮아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의선은 합병으로 부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비상장주식에서 상장주식으로 전환되어 이익실현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는데, 과세 등의 규율은 모두 회피하게 되었다.

5) GS그룹 소속 STS로지스틱스

회사의 개요 - STS로지스틱스는 2000 년 6 월 설립된 STS로지스틱스는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승산은 2013 년 10 월 STS로지스틱스(종합물류업)과 승산레저(골프장 운영업)를 흡수합병하였다. 승산은 1969 년 설립된 부동산임대업, 리조트와 골프장 운영, 물류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이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STS로지스틱스의 설립 당시 지분구조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06 년 4 월부터 2009 년말까지 지분구조는 허정홍 70%, 허석홍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승산에 합병되며 허정홍은 합병회사의

지분 4.4% 그리고 허석홍은 6.5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19> [STS로지스틱스의 지분 추이] (단위: 주, %)

	2006~2013.10	
	주식수	지분율
허정홍	42,000	70.00
허석홍	18,000	30.00
계	60,000	100.00

<표 20> [합병 후 승산 지분구조] (단위: 주, %)

	2013.12.31	
	주식수	지분율
허용수	919,080	49.26
허완구	355,615	19.06
허인영	330,925	17.73
김영자	72,172	3.87
허석홍	105,960	5.68
허정홍	82,143	4.40
계	1,865,895	100.00

내부거래 현황 - STS로지스틱스는 매출 전액은 GS칼텍스와의 거래로 석유류제품 운송 거래이다.

<표 21> [STS로지스틱스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피합병	6,645	5,978
총매출	피합병	6,645	5,978
비중	피합병	1000.00	100.00
영업이익		342	258

합병한 승산과 승산레저의 2012 년 매출액 등과 STS로지스틱스의 매출액 등을 단순합산한 경우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표 22>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정] (단위:백만 원,%)

	STS로지스틱스	승산	승산레저	합계
특수관계자 매출	6,645	3,631	1,147	11,423
총매출	6,645	10,468	5,716	22,829

비중	100.00	34.68	20.06	50.04
영업이익	342	- 8,891	-1,863	-10,412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합병 전인 2012 년 말 기준 지배주주 일가는 STS로지스틱스 지분 100%를 보유하여 과세 기준지분 3%를 초과했으며, 내부거래 비중 역시 100%로 기준 거래비중인 30%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었다. 2013 년에 합병되어 이후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12 년 기준으로 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STS로지스틱스를 합병한 승산은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2011 년 이후 연속 3 년 영업손실로 증여세 과세액이 0 원이다. 따라서 STS로지스틱스 주주였던 허정홍, 허석홍은 영업적자가 나는 계열회사와의 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2012 년 말을 기준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2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도 100%(2012 년 기준)이므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합병 이후 허정홍, 허석홍의 승산 지분은 10% 미만이지만 다른 지배주주 일가와 합산한 지분이 2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효율성 증대 등을 이유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6) GS그룹 소속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앤티, 코스모건설

회사의 개요 -

* 코스모앤컴퍼니(구, 남경실업, 코스모양행) 1981 년 6 월 설립, 2002 년 7 월 물적분할을 실시하여 코스모양행, 코스모아이넷을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2014 년 8 월 코스모건설, 코스모뉴인더스트리(2014 년 7 월 설립,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코스모글로벌(2002 년 7 월 설립, 도매업)을 흡수합병하였다. 주요수익원은 상표권사용료이다.

* 정산이앤티: 2000 년 6 월에 설립된 건설회사이며, 2006 년 6 월 허선홍과 코스모정밀화학이 각각 50%씩 지분(주당 1 원)을 취득하면서 GS그룹에 편입되었다. 2013 년 3 월 코스모건설과 합병하였다.

* 코스모건설: 2001 년 2 월 설립하였다. 2013 년 3 월 정산이앤티를 합병하였고, 2014 년 8 월 코스모앤컴퍼니에 합병되었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 코스모앤컴퍼니 : 확인가능한 2001 년부터 대표이사 허경수(45%), 허연수(35%)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9 년 허경수 지분 26%를 4 세 허선홍에게 매각(주당 15,890 원)하였으며, 2011 년 2 월 윤봉식(10%), 허연호(5%), 허연숙(5%)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 년 1 월 허경수가 4 세 허수연(5%), 허지연(5%)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 년 8 월 코스모건설, 코스모뉴인더스트리, 코스모글로벌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였다. 합병 후 허경수(5.7%), 코스모산업(90.2%)와 코스모화학(4.1%)의 지분구조가 되었다. 코스모산업은 허경수 94.4%, 윤봉식 5.6%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회사이다. 따라서, 허경수는 코스모앤컴퍼니에 직접지분 5.7%, 간접지분 85.60%를 보유하고 있다.

<표 23> [코스모앤컴퍼니의 지분추이] (단위: %)

	2014.10	2014.1	2011.2	2009.9	2008
허경수	5.7	9	19	19	45
허연수	-	35	35	35	35
허선홍	-	26	26	26	
윤봉식	-	10	10		
허연호	-	5	5		
허연숙	-	5	5		
허수연	-	5	-		
허지연	-	5	-		
코스모산업	90.2	-	-		
코스모화학	4.1	-	-		
계	100.00	100.00	100.00	80.00	80.00

* 정산이앤티 : 2005 년 이전 정산이앤티는 코스모레포트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6 년 6 월 허선홍과 코스모정밀화학이 각각 50%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이후 허선홍이 보유한 50%를 코스모건설에 매각하였다. 합병 직전 정산이앤티는 허경수가 50%, 그리고 코스모건설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코스모건설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앤컴퍼니가 99.04% 그리고 허경수가 0.96%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정산이엔티는 실질적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표 24> [정산이엔티의 지분추이] (단위: %)

	2009.9.2~	2008.12~	2006.6.8~	2005.~
허선홍	-	-	50.00	-
허경수	50.00	-	-	-
코스모정밀화학	-	50.00	50.00	-
코스모건설(디앤아이)	50.00	50.00	-	-
코스모레포트	-	-	-	100.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 코스모건설: 정산이엔티는 2013 년 코스모건설과 합병하였으며, 2014 년 8 월 코스모엔컴퍼니와 합병 전까지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코스모엔컴퍼니는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허경수 외 지배주주 일가도 코스모건설에 간접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25> [코스모건설의 지분추이] (단위: %)

	2014.5.9~ (유상증자)	2014.3~ (유상증자)	2013.3.29 (합병)	합병전
코스모엔컴퍼니	88.53	99.05	99.04	100.00
허경수	11.47	0.95	0.96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내부거래 현황 -

* 코스모엔컴퍼니: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코스모엔컴퍼니는 코스모신소재와 코스모화학과 내부거래가 대부분인데 대다수가 상표권사용료이다. 최근 3 년간의 내부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코스모엔컴퍼니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5,855	8,098	8,037
총매출	5,953	8,378	8,552
비중	98.35	96.66	93.98
영업이익	1,559	3,147	3,319

* 정산이엔티: 계열회사에 기계설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평균 65% 이상이 계열사 매출이며, 특히 상장회사인 코스모화학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27> [정산이엔티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피합병	13,297	6,231
총매출	피합병	29,234	9,710
비중	피합병	45.48	64.17
영업이익		508	-15

* 코스모건설: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의 공장건설을 담당하여 내부거래비중이 높았으나, 2013 년 공장이 완공된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표 28> [코스모건설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4,228	25,442	10,116
총매출	35,279	40,667	23,771
비중	11.98	62.56	42.56
영업이익	-6,935	-5,238	-1,617

합병 후의 내부거래 비중과 영업이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2012 년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엔티, 코스모건설의 매출액 등을 단순합산한 경우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29> [합병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정(2012 년)] (단위 ;백만 원,%)

	코스모앤컴퍼니	정산이엔티	코스모건설	계
특수관계자 매출	8,098	13,297	25,442	46,837
총매출	8,378	29,234	40,667	78,279
비중	96.66	45.48	55.18	59.83
영업이익	3,147	508	-5,238	-1,583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 코스모앤컴퍼니 : 2012 년 기준으로 지배주주 일가들이 각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내부거래 비중도 90%를 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허경수 3.2 억원, 허연수 6.4 억원, 허선희 4.6 억원, 윤봉식 1.4 억원, 허연호 및

허연숙 각각 0.4 억원의 증여의제이익이 추정된다.

그러나, 합병 후 허경수만이 직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과세대상자가 줄어들고, 합병 이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적인 연관성 없는 회사들을 합병함으로써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 영업이익 규모도 축소하여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 코스모건설 : 2012 년 기준으로 허경수는 직접 지분을, 코스모앤컴퍼니의 주주들은 간접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과세대상자이다. 하지만, 영업적자이므로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 정산이앤티 : 2012 년 기준으로 허경수는 직접 지분을, 코스모건설의 주주들은 간접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과세대상자이다. 허경수 0.6 억원, 허연숙 0.2 억원, 허선희 0.1 억원의 증여의제이익이 추정된다. 하지만, 2014 년 합병을 통해서 과세를 회피하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합병 전 2012 년 기준 정산이앤티는 허경수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45%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합병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였다. 또한, 코스모앤컴퍼니는 합병 전 비상장회사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도 90%를 초과하므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병 등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는 직접 지분율을 5.7%로 낮추고, 간접지분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사례로 볼 수 있다.

7) 두산그룹 소속 동현엔지니어링

회사의 개요 - 동현엔지니어링은 1986 년 10 월 설립된 사업시설유지관리업체이다. 2005 년 그룹 위장계열사로 밝혀졌으며, 두산그룹의 건물관리 용역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장하였다. 2011 년 DFMS(구 두산모터스)와 합병하였다. DFMS 역시 지배주주 일가가 100% 소유한 개인회사였으나, 2012 년 (주)두산에 합병되었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그룹에 편입된 2006 년 4 월부터 소유구조가 확인가능하며 박용곤 명예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8 년 6 월 박용오 전 회장의 지분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갔다. 당시 거래단가는 0 원이었다.

<표 30> [동현엔지니어링의 지분추이] (단위: %)

	2008.6. 이후		2006.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용곤	37,189	37.19	29,800	29.80
박용오	-	-	19,868	19.87
박용성	24,794	24.79	19,868	19.87
박용현	24,794	24.79	19,868	19.87
박용만	13,223	13.22	10,596	10.60
합계	100,000	100.00	100,000	100.00

내부거래 현황 - 확인 가능한 2007 년 공시자료에 의하면, 내부거래 비중은 35.77%이었다.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지배주주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기준비율 3%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도 30%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2011 년 DFMS와의 합병, 2012 년 (주)두산과의 합병을 통해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하므로 규제대상이 되었을 것이나, 합병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8) CJ그룹 소속 CJ시스템즈

회사의 개요 - CJ 시스템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 인터넷 솔루션 및 콘텐츠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및 시스템의 수탁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5 년 3 월 15 일에 설립되었다. 회사는 CJ 그룹 등의 정보시스템 업무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화와 관련된 업무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 및 인터넷솔루션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014 년 12 월 건강 및 미용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CJ 올리브영과 합병하였다. CJ 올리브영은 CJ(주)의 100% 자회사이었다.

지분보유 현황 - 이재현이 CJ 시스템즈의 주식을 어떻게 처음 보유하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최초 확인 가능한 시점은 1999 년 말로 당시 298,667 주(29.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나, 자기주식 소각으로 지분율은 31.88%로 증가하였다. 2007 년 지분 10%를 보유하던 한국후지쯔가 CJ 에 지분을 매각하여 CJ 의 지분은 62.12%로 증가하였다.

2014 년 12 월 합병 직전 이재현은 아들 이선호에게 지분 15.91%를 증여하여 15.9%를 보유하게 되었다. CJ 올리브영과 합병으로 지분이 희석되어 지분율이 약간 하락하였다.

<표 31> [CJ 시스템즈의 지분추이] (단위: %)

	2014.12 합병 후	2014.12 합병 전	2010.7~	2010.4~	2007~	1999~2006
이재현	11.35	15.97	31.88	29.86	29.87	29.87
이선호	11.30	15.91				
CJ	76.07	66.32	66.32	62.12	62.13	52.13

내부거래 현황 - CJ 시스템즈의 총매출액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89%정도이었으나, 2012 년과 2013 년 들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표 32> [CJ 시스템즈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219,566	176,007	173,590
총매출	277,217	210,959	188,901
비중	79.20	83.43	91.89
영업이익	25,362	17,159	10,158

<표 33> [합병 후 내부거래 비중 추정] (단위: 백만 원, %)

	CJ 시스템즈	CJ 올리브영	합병회사
특수관계자 매출	219,566	6,039	225,622
총매출	277,217	457,118	734,335
비중	79.20	1.32	30.72
영업이익	25,362	-994	24,368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 CJ 시스템즈는 이재현이 31.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기준비율 3%를 초과한다. 또한 2013 년 내부거래 비중도 79.20%로 과세대상이 된다. 2013 년말 영업이익은 25,362 백만 원으로 이재현의 증여의제액은 36.7 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업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CJ 올리브영과 합병으로 인하여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30.72%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과세를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0%를 초과하고 있고, 내부거래 비중이 79.20%이므로 규제대상이 된다. 합병 이후에도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2.65%, 내부거래 비중이 30%로 규제대상은 될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 증대 등을 이유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9) 동국제강그룹 소속 디케이에스앤드

회사의 개요 - 디케이에스앤드는 2006 년 해운중개업 및 항만운송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 년 7 월 상장회사인 인터지스에 합병되었다. 합병 후 인터지스의 해운사업부문으로 동국제강의 원재료 해상운송을 수행함과 동시에 2011 년 남동발전의 석탄운송을 시작으로 현재 현대제철의 원자재 해상운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지스는 1956 년 대성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0 년과 2002 년에 각각 천양항운과 동국통운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9 년 국제통운과 삼주항운을 흡수합병하며 사명을 인터지스로 변경하였다. 화물운송업, 운송관계서비스업 및 하역업이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2 년 디케이에스앤드를 합병하여 해상화물사업에 진출하였다. 2012 년부터 브라질, 중국 등 해외 물류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디케이에스앤드는 동국제강과 인터지스가 각각 5%를 보유하고 나머지 90%를 지배주주 장세주 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사장의 두 부인과 아들들이 보유해왔다. 합병 후 지배주주 일가는 인터지스 지분 10.5%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인터지스 주주인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 지분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 34> [인터지스 및 디케이에스앤드의 지분추이] (단위: 주, %)

	인터지스(합병 후)		디케이에스앤드(합병 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국제강	5,846,361	39.31	20,000	5.00
유니온스틸	1,343,840	9.04	-	-
인터지스	86,642	0.58	20,000	5.00
남희정	259,923	1.75	60,000	15.00
장선익	259,923	1.75	60,000	15.00
김남연	259,923	1.75	60,000	15.00
장승익	259,923	1.75	60,000	15.00
장훈익	259,923	1.75	60,000	15.00
장효진	259,923	1.75	60,000	15.00

내부거래 현황 - 디케이에스앤드는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의 해상물류를 담당하여 합병 전까지 매출 대부분이 두 상장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한 것이었다.

<표 35> [디케이에스앤드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1	2010	2009
특수관계자 매출	80,342	63,087	45,081
총매출	100,739	66,468	47,288
비중	79.76	95.51	95.33
영업이익	4,002	2,240	4,072

합병 후 인터지스는 기존 화물차운송업 외에 수상운송 서비스 등을 더해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등의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6> [인터지스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특수관계자 매출	208,633	186,006
총매출	522,175	449,833
비중	39.95	41.35
영업이익	18,714	17,235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 디케이에스앤드는 합병 전 2011 년을 기준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90%, 내부거래 비중도 79.76%로

기준거래비중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011 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배주주 일가의 증여의제이익은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모두 각각 2.4 억원으로 추정된다.

합병 후 지배주주 일가의 직접지분이 3%미만으로 미미하고, 최대주주인 동국제강은 지배주주 일가가 30%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간접지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즉 합병을 통해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에 적용되려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 직접 보유한 지분이 30% 이상(상장회사 기준)이어야 한다. 합병 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90%로 기준 지분을 초과하지만, 합병 후 인터시스 특수관계인 지분은 10.5%로 상장회사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합병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10) 영풍그룹 소속 케이지인터내셔널

회사의 개요 - 2010 년 1 월 장세준과 장세환이 각각 16.67%를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고려아연으로부터 아연정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코크스와 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영풍에는 아연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1 년 내부거래 비중은 100%이다. 즉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2013 년 1 월 서린상사와 합병하였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2010 년 1 월 장세준과 장세환이 각각 16.67%를 출자하여 설립한 후 변동이 없었다. 합병 후 장세준과 장세환 지분은 합산 1.1%로 크게 줄었으며, 기존 서린상사 주주인 장형진과 장철진 지분 32.24%를 더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직접 지분은 33.34%이다.

<표 37> [케이지인터내셔널의 지분추이] (단위: %)

	2010~2013
장세준	16.67
장세환	16.67

<표 38> [서린상사의 합병 후 지분] (단위: %)

	2013~
장형진	16.12

장철진	16.12
장세준	0.55
장세환	0.55
고려아연	49.97
최창근	4.84
최창규	6.45
기타	5.41

내부거래 현황 -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 영풍 등과 사업연관성 높으며, 매출 상당부분이 이들 회사와의 거래이다. 하지만 합병 후 총 매출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비중은 15%대로 낮아졌다.

<표 39> [케이지인터내셔널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12,133	11,931
총매출	12,133	19,552
비중	100	61.02
영업이익	1,744	5,295

<표 40> [서린상사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24,906	22,583	45,850
총매출	288,257	329,286	322,227
비중	8.64	6.86	14.23
영업이익	10,167	17,524	30,067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 지배주주 일가가 각각 16.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기준비율 3%를 초과한다. 또한 2012 년 내부거래 비중도 100%로 과세대상이 되었다. 2012 년말 영업이익은 1,744 백만 원으로 증여의제액은 장세준과 장세환은 각각 1.6 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3 년 합병으로 장세준과 장세환은 지분율이 하락하여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 합병 전 비상장회사이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33.34%로 기준 지분율 3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100%이므로 규제대상이 되었다. 합병 후에도 서린상사의 기존 지배주주 지분과 내부거래로 인하여 규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13 년 합병으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11) 태광그룹 소속 티알엠, 티시스, 성광산업

티알엠(구 태광리얼코)는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업, 구 티시스(구, 태광시스템즈)는 IT 및 마케팅서비스업이 주사업목적인 계열사로 이호진과 아들 이현준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였다. 두 회사 모두 매출 90% 이상이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과세 대상 및 공정거래법 상 규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 년 영업적자가 크고,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골프장 운영회사인 구 동림관광개발(현 티시스)에 흡수 합병되며, 내부거래 비중의 하락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성광산업은 과거 태경물산 양산공장의 자산을 양수 받아 설립된 계열사로 지관류를 생산하여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판매하였다. 지배주주 이호진은 성광산업 지분 56.6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성광산업은 2011 년 2 대 주주 서한물산(38.33%)에 흡수합병되었다. 성광산업은 태광산업 등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한 계열사로 과세 대상 및 공정거래법 상 규제 대상이었으나, 합병을 통해 과세를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12) 대성그룹 소속 서울도시가스, 대성정보시스템, 에스필

서울도시산업은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하는 계열사로 지배주주 자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서울도시가스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평균 50%를 상회하여 과세 및 규제 대상이었으나 2013 년 에스씨지솔루션즈와의 합병으로 과세를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대성정보시스템(구 가하홀딩스)와 에스필은 각각 부동산 개발 컨설팅과 실내건축이 주 사업목적인 계열사로, 대성정보시스템은 지배주주의 자녀 및 배우자가 100%를 보유했으며 에스필은 대성정보시스템의 자회사였다. 이들 계열사의 매출은 거의 전적으로 내부거래에 의존하여 과세 및 규제 대상이었으나, 대성정보시스템이 2012 년 대성산업에 합병되면서 과세와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13) 대성그룹 소속 알앤알 건설(분할)

회사의 개요 - 알앤알건설은 2001 년 1 월 설립되었으며, 2011 년 2 월

8 일자로 토목건축 관련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인 대성이앤씨로 포괄이전하였다. 현재는 대성이앤씨, 대성밸류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 지주회사이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알앤알건설은 김영훈이 99.83%, 김영주가 0.17%로 지배주주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성이앤씨는 알앤알건설이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김영훈과 김영주가 보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현황 - 알앤알건설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부거래 비중이 40%를 넘어 지원성거래로 의심된다. 하지만, 토목건축 관련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이후에는 상품·용역 관련 내부거래가 없다. 2011년 이후 매출과 내부거래는 거의 모두 대성이앤씨의 지분법평가수익이다.

<표 41> [알앤알건설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3,260	3,045	323
총매출	3,632	3,207	7,529
비중	89.75	94.9	4.2
영업이익	3,242	2,405	6,644

대성이앤씨는 물적분할된 이후 대성에너지 등과의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내부거래의 내용은 대성에너지와의 배관공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사업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수 있다.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 알앤알건설은 김영훈이 간접적으로 99.83%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지분법평가수익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성이앤씨는 김영훈이 간접적으로 99.83%를 보유하나 내부거래 비중도 30%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향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 알앤알건설은 김영훈이 간접적으로 99.83%를 보유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89.75%이므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이 지분법평가수익이므로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대성이앤씨는 지배주주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결국 알앤알건설은 분할을 통해 양쪽 회사 모두 규제 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매각 또는 해산을 통한 회피 사례

1)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글로벌비스

회사의 개요 - 현대글로벌비스는 2001 년 2 월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동차 물류사업의 경우 자동차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운송과 물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고, 그룹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었다. 현대글로벌비스 설립 당시 현대자동차는 물류회사를 그룹 계열사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실상은 계열사가 출자하지 않고 정몽구와 정의선이 100%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지분보유 현황 - 정몽구와 정의선 부자가 100%의 지분을 출자하였다가 정씨 부자는 2004 년 지분 25%를 전략적 제휴자인 Whilh. Wilhelmssen ASA에 매각하여 지분이 75%로 하락하였다. 2005 년 상장과 함께 20% 지분을 일반공모 유상증자함에 따라 지분이 60%로 하락하였다. 이후 정의선은 31.88%의 지분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정몽구는 2006 년 4 월 횡령·배임으로 기소되어 2007 년 9 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8400 억원의 사회환원을 명령받아 현대글로벌비스 주식 11.73%(6500 억원 상당)를 정몽구재단(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 증여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주주대표소송에 피소되어 손해배상을 위해 2010 년 현대자동차에 3.80%(1638 억원 상당)를 대물변제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1.09%(469 억원 상당)를 매각하여 지분율이 11.51%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5 년 2 월 정몽구와 정의선의 지분율 합계를 30%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각각 13.58%, 8.59%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였다.

<표 42> [현대글로벌비스의 지분추이] (단위: %)

	2015.2		2011~201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의선	8,732,290	23.29	11,954,460	31.88
정몽구	2,517,701	6.71	4,317,701	20.29

내부거래 현황 - 현대글로벌비스의 주된 사업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의 기존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보조적인 거래관계로서, 이들 회사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기회유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회사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직접 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자동차를 운송, 부품계열회사(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와 완성품제조회사(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간에 부품 등을 운송하도록 운송사업자를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2002 년 설립한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11 년간 매출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 년 평균 83%에 달하고 있어 계열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한편, 2007 년 공정위로부터 현대글로벌비스와 거래한 현대자동차 등 계열회사들이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⁹, 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결 내용 대부분이 유지되었고¹⁰,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 현대자동차 등이 상고를 포기하여 고등법원 판결대로 확정되었다.¹¹

현대글로벌비스의 최근 3 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43> [현대글로벌비스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2,966,527	3,249,520	3,410,408
총매출	10,174,668	9,272,885	7,547,777
비중	29.16	35.04	45.18
영업이익	404,464	422,902	339,551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 2013 년말 기준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⁸ 규율 여부를 판단할 경우는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만으로 내부거래비중을 판단한다.

⁹ 공정위 2007.10.24., 사건번호 2007 조사 0845 의결

¹⁰ 서울고등법원 2009.8.19.선고, 2007 누 30903 판결

¹¹ 2012 년 12 월 판결을 며칠 앞두고, 돌연 현대자동차 등 원고들이 상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공정위의 의결대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글로벌비스를 지원한 현대자동차는 4,655 억원, 기아자동차는 2,574 억원, 현대모비스는 1,180 억원, 현대제철은 139 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었다.

지분은 52.17%이었으나,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과세를 피하게 되었다. 한편, 내부거래 비중이 다시 30%를 초과하더라도 2015년 2월 지분 매각으로 정몽구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대폭 감소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에 적용되려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 직접 보유한 지분이 30% 이상(상장회사 기준)이어야 한다. 2015년 2월 정몽구와 정의선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여, 지분을 합계를 29.99%로 낮추었다.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결국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2) CJ그룹 소속 CJGLS

회사의 개요 - CJGLS는 1983년 2월 직물제조 및 판매업체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11월 주요 사업목적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전환하였다. 1998년 상호를 CJGLS로 변경하였고, 2013년 4월 CJ대한통운에 피합병 되었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CJGLS는 1996년 주요 사업을 운수 및 창고업으로 전환하고 지배주주 이재현 및 CJ(당시 제일제당)가 주식 전액을 인수하여 계열편입 되었다. 당시 이재현 지분은 95%이었으나, 2000년 중 지분이 100%로 증가되었다. 2006년 경제개혁연대에서 지원성거래로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후 CJ가 실권주 인수 등을 통해 지분을 증가시켰으며, 2011년 8월 이재현은 보유 지분을 모두 CJ에 매각하였다. 이후 CJGLS는 씨제이대한통운에 피합병되었다. 합병 회사인 씨제이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이 20.08% 그리고 케이엑스홀딩스가 20.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44> [CJGLS의 지분추이] (단위: %)

	2011.8~	2009.7~	2007.7~	2006.7~	2005.8	2002~
이재현	-	41.52	46.35	53.97	73.99	74.4
CJ	72.48	23.85	39.12	45.55	25.39	-

내부거래 현황 - 2002년 CJGLS의 내부거래 비중은 62%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이재현이 CJ에 지분을 매각하기 전인 2012년 내부거래 비중은 31.8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의 감소는 내부거래 금액 총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CJGLS의 전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표 45> [CJGLS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333,621	289,553	255,755
총매출	1,046,151	921,523	751,359
비중	31.89	31.42	34.04
영업이익	28,155	30,773	-992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합병 전 소유구조 및 내부거래 비중을 고려하면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과세대상이며 공정거래법 상 규제대상이었으나, 이재현이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과세대상과 규제대상을 모두 회피하였다.

3) LS그룹 소속 파운텍

회사의 개요 - 파운텍은 2004 년 설립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의 제조와 판매 계열사이다. 핵심 사업은 전력케이블의 핵심부품인 PVC 등의 제조, 판매로 LS전선과 사업연관성이 높다. 2013 년 총매출액은 69,687 백만 원이며 관계사매출은 51,404 백만 원으로 관계회사 매출비중은 74%이며 해외계열사까지 고려하면 88%에 달한다. 회사는 LS전선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등에 힘입어 설립 후 3 년 만에 당기순이익을 달성, 확대하였다. 따라서 핵심 계열사 LS전선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지배주주 일가가 이익을 실현한 회사기회 유용 문제가 있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설립 당시 파운텍은 LS전선이 51% 그리고 49%의 지분은 구자홍 등 지배주주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1 년 11 월 구자홍 등 지배주주의 가족들 지분을 LS전선에 매각하여 현재 LS전선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46> [파운텍의 지분추이] (단위: %)

	2011.11~	설립~
LS전선	100.00	51.00
구자홍 등 지배주주	-	49.00
계	100.00	100.00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직접 보유했다면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과세대상이며 공정거래법 상 규제대상일 것으로 추정되나,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과세대상과 규제대상을 모두 회피하였다.

4) LS그룹 소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회사의 개요 -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LS글로벌) 는 2005 년 12 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금속 및 비금속 합금 구매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LS산전 등 LS그룹 주요계열사가 원재료 구매 대행을 맡겨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LS그룹 계열사는 LS글로벌 설립 이후 LS니꼬동제련과의 직거래를 포기하고 LS글로벌을 통해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즉 2005 년까지 LS니꼬동제련은 LS산전, LS전선, 가온전선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전기동을 직접 생산, 납품했으나, LS글로벌 설립 후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구매 대행하였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설립 당시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그리고 49%의 지분은 구본웅 등 지배주주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1 년 11 월 모든 주주가 지분을 LS에 매각하여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다.

<표 47> [LS글로벌 지분추이] (단위: %)

	2011.11~	설립~
LS 전선	-	51.00
지배주주 가족		49.00
LS	100.00	
계	100.00	100.00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직접 보유했다면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과세대상이었으며, 공정거래법 상 규제대상이었으나,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과세대상과 규제대상을 모두 회피하였다.

5) 동국제강그룹 소속 디케이유엔씨

회사의 개요 - 디케이유엔씨는 계열사 유니온스틸 전산부문을 분사하여 1997년 9월 설립되었다. 컴퓨터 S/W 개발 및 컴퓨터용품 판매, 정보시스템 통합, 정보처리 수탁관리 등이 주요 사업목적이다.

2005년까지 디케이유엔씨의 전신인 탑솔정보통신은 주로 유니온스틸의 전산서비스만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계열사는 독자적으로 IT부문을 아웃소싱하였다. 2005년 말부터 동국제강 그룹은 계열사 IT부문을 통합운영하였으며, 디케이유엔씨가 이를 담당하였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계열사 IT부문을 전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5년 지배주주 장세주와 장세욱이 각각 40.7%, 38%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7년 유니온스틸이 약 20%를, 2011년에는 유니온스틸과 동국제강이 지배주주 보유 지분을 매입하여 51.9%를 보유하게 된다. 2013년 11월에는 유니온스틸이 장세주, 장세욱 회장 나머지 지분 전부를 인수했으며, 2014년에는 한국휴렛팩커드 보유 지분 3.4%를 자사주로 매입했다가 역시 유니온스틸과 동국제강이 인수하였다. 2014년 현재 유니온스틸이 46.27%, 동국제강이 53.73% 보유 중이며 지배주주 보유 지분은 없다.

<표 48> [디케이유엔씨의 지분추이] (단위: %)

	2013.11	2011.9.24	2006
장세주	-	15.00	40.70
장세욱	-	15.00	38.00
유니온스틸	44.68	14.70	19.85
동국제강	51.90	51.90	

내부거래 현황 - 디케이유엔씨의 내부거래는 주로 상장계열사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을 중심으로 부자재 및 소모성자재 제공, ITO 서비스, 전산유지보수 및 운영과 전산장비제공, 경영혁신프로젝트 등을 제공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체 매출 내 관계사 매출 비중은 30~40%를 유지하고 있다.

<표 49> [디케이유엔씨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2013	2012	2011
특수관계자 매출	75,922	78,017	90,086
총매출	204,272	233,216	200,854
비중	37.17	33.45	44.85
영업이익	934	4,101	4,132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회피 - 지배주주 지분 매각 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과세대상이었으며, 공정거래법 상 규제대상이었으나,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과세대상과 규제대상을 모두 회피하였다.

6) 태광그룹 소속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해산)

회사의 개요 - 템테크는 사업시설유지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케이블회사 등의 공사를 담당하였다. 2013 년 3 월에 해산하였다.

티피엔에스 2009 년 8 월 설립된 영화, 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티브로드홀딩스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급성장하였으나, 2013 년 3 월 청산하였다.

티에이치엠컨설팅은 2009 년 7 월 설립된 경영컨설팅업체이다. 2013 년 7 월 청산하였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템테크와 티에이치엠컨설팅은 지배주주인 이호진이 발행주식총수에서 1 주 모자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이 1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티에이치엠컨설팅은 이호진이 51%, 이현준이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은 세 회사의 2013 년 지분구조이다.

<표 50> [템테크, 티피엔에스, 티에이치엠컨설팅의 지분추이] (단위: %)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이호진	100	100	51
이현준	-	-	49

내부거래 현황 - 템테크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97.55%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되었다.

티에이치엠컨설팅의 매출액은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100.00%이다

티피엔에스도 티브로드홀딩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은 2011 년도 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다.

<표 51>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의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 원, %)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특수관계자 매출	28,825	4,941	39,802
총매출	29,550	4,941	41,061
비중	97.55	100.00	96.93
영업이익	1,185	-88	4,580

상증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 과세와 규제대상이었으나, 회사가 해산되어 현재 과세대상이나 규제대상을 회피하였다.

3. 바람직한 해소 사례 -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SVN

회사의 개요 - 신세계에스브이엔(구, 조선포털베이커리)은 조선포털이 제과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05년 1월 별도법인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직후 지배주주 이명희의 딸 정유경이 지분 40%를 인수하였다. 당시 조선포털의 제과부문은 이마트와 신세계 내 제과 점포망(데이앤데이, 달로와요, 조선델리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인망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계열사 영업망을 활용한 제과사업의 기회를 정유경이 유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9월 공정위는 신세계 등이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브랜드에 입점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며 과징금 40.6 억원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였다.

지배주주 지분보유 과정 - 분할 당시 조선포털이 전량 보유했으나, 4개월 만에 정유경씨가 40% 지분을 매입하였다. 매입가는 주당 7,976 원으로 총 인수자금은 약 63.8 억원이다. 그 외 15%를 우리사주와 임원 등이 보유해 왔다. 2012년 말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정유경의 보유주식 80 만주를 정유경의 취득단가인 주당 7,976 원에 유상감자시켰다.

결과적으로 정유경은 지분보유 기간동안 12 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얻은 것 말고는 추가적인 이득은 없었다. 취득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배당금수익 역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유경의 지분 소각은 앞서 기술한 사례들과는 다르게 바람직한 해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VII.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현행 규율의 문제점

(1) 과세와 규제 회피 가능성

분석결과 2011 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이 논의된 시점부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들에 대한 과세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지분매각이나 분할·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의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얻은 이익을 실현하게 되어 지배주주 일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나마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규제대상의 기준 지분율, 기준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어 과세 등을 회피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편법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절반인 15% 이하이거나 주주의 지분율이 3% 이하이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정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경우만 과세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계산식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의 절반(15%)이라고 하여 차감해 주고, 지분율도 한계지분율(3%)이라고 하여 차감해 주어 실제 이익보다 세법상 이익이 적게 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내부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지배주주 일가가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¹² 지분율 계산시에는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비중을 계산할 때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에

¹²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적용여부는 최초 입법 시에는 제외하였다가 과세하는 것을 변경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재개정으로 과세가 제외되게 되었다.

따라 과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두산그룹이 있는데, 두산은 사업지주회사로 IT,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여 계열회사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으나, 지배주주 일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의 문제점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배주주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규제되지 않으며, 소유구조를 간접화하여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를 달리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장회사의 경우 더 많은 정보공개, 내부통제 장치,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로 비상장회사와 반드시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거의 비슷하고,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해관계자가 더 많은 상장회사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다른 지분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크지 않다.

셋째, 상당성에 대한 가격요건과 물량요건에 있어서 현재의 현황을 기초로 일정금액 또는 비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넷째, 사업기회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의 내용이 다르다. 두 법이 내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데, 공정거래법은 상법에 비해 그 범위를 축소된 문제가 있다.

다섯째, 일감몰아주기의 적용 예외사유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효율성 증대 사 중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라는 조항은 기존의 일감몰아주기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으로 오히려 기존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를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2. 규율의 개선방안

(1)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개선방안

첫째, 합병을 통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대부분은 내부거래 비중이 희석되어 과세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거래 비중 기준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공제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실제 지배주주 일가가 얻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게 계산되는데, 이는 과세대상자들의 세부담을 현격히 덜어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분율에서도 한계지분율(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 10%)을 공제하는 것도 세부담을 낮추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이 마련되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 2014년 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상거래비율(50%)을 공제하고, 한계지분율도 10%로 상향조정하여 상당한 과세부담을 줄여 주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이 사익편취 및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중소기업 소유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여야 약자로만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살리기와 조세형평 원칙의 구현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넷째,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라면 배당수익,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일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근거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의 개선방안

첫째,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판단할 때 간접지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삼성웰스토리과 같이 물적분할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거나 지주회사 체제 그룹에서 지배주주 일가는 지주회사 외의 계열회사에는 직접 지분이 없어 규제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둘째,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를 동일하게 20%로 정해야 한다. 상장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다면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존의 30% 지분요건을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과 동일하게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및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효율성 증대는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소재 등의 거래만 허용하되, 수직계열화된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귀속되는지 않을 경우에만 효율성 증대를 인정해야 한다. 보안성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만 보안성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긴급성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수행할 경우, 시간상 지연으로 인하여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성을 인정해야 한다.

<별첨. 일감몰아주기 등 분석결과 요약>

그룹	회사명	과세	물량 규제	기회 유용	회피 여부	비고
삼성그룹	제일모직 (구,삼성에버랜드)	x	x	x	해당	비관련사업 합병, 물적분할로 간접화
	삼성 SNS	x	x	x	해당	비관련사업 합병
	삼성 SDS	o	x	x	해당없음	지분율 미달
	가치네트	x	x	x	해당없음	2014 해산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글로벌비스	o	x	x	해당	2015 지분 일부매각
	현대엠코	x	x	x	해당	합병
	현대위스코	x	x	x	해당	합병
	현대오토에버	o	o	x	해당없음	
	이노션	o	o	x	해당없음	
	삼우	x	x	x	해당없음	특수관계 해소
	현대머티리얼	o	o	o	해당없음	
	현대커머셜	x	o	o	해당없음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o	o	x	해당없음	
	본텍	x	x	x	해당없음	2005 매각
SK 그룹	SKC&C	o	o	o	해당없음	
	SKD&D	x	x	x	해당없음	
	인포섹	o	x	x	해당없음	간접지분으로 과세만 적용
	와이더덴	x	x	x	해당없음	2006 매각
	이노에이스	x	x	x	해당없음	2007 매각
LG 그룹	지흥	x	o	o	해당없음	
	에이치에스애드,엘베스트, 서브원,엘지씨엔에스,엘지 경영개발원,엘지실트론,엘 지스포츠	o	x	x	해당없음	간접지분으로 과세만 적용
현대중공업그룹						
롯데그룹	시네마통상	x	o	o	해당없음	2013 영업중단
	시네마푸드	x	o	o	해당없음	2013 영업중단
	블리스	x	x	x	해당없음	자발적 해소, 2012 매각
GS 그룹	승산	o	o	x	해당없음	2013 영업손실
	STS 로지스틱스	x	x	x	해당	비관련사업 합병
	코스모앤컴퍼니,정산이앤 티,코스모건설	x	x	x	해당	비관련, 적자회사와 합병
	GS 아이티엠	o	o	x	해당없음	

	캠택인터내셔널	o	o	x	해당없음	
	GS 네오텍	o	o	x	해당없음	
	엔씨타스	x	x	x	해당없음	
한진그룹	싸이버로지텍	o	o	x	해당없음	
	싸이버스카이	o	o	x	해당없음	
	유니컨버스	o	o	x	해당없음	
	한진지티앤에스	x	x	x	해당없음	2014 해산
한화그룹	한화에스앤씨	o	o	o	해당없음	
	한컴	o	o	x	해당없음	
	한화에너지(군장열병합발전 전면여수열병합발전)	o	x	x	해당없음	간접지분으로 과세만 적용
	에스엔에스에이스	o	o	x	해당없음	
두산	동현엔지니어링	x	x	x	해당	비관련사업 합병
	세계물류	x	x	x	해당없음	2006 해산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x	x	o	해당없음	
	신세계에스브이엔	x	x	x	해당	2012 매각
	신세계인터내셔널	x	x	x	해당없음	상장 20%지분으로 요건 미달
	신세계건설	o	x	x	해당없음	
	신세계아이앤씨	o	x	x	해당없음	
CJ 그룹	CJ 시스템즈	x	o	x	해당	비관련사업 합병
	CJ 파워캐스트	o	o	x	해당없음	
	재산커뮤니케이션즈	x	x	o	해당없음	
	CJGLS	x	x	x	해당	2011 매각
	CJ 모닝월	x	x	x	해당없음	2006 합병
	CJ 엔터테인먼트	x	x	x	해당없음	2006 분할 합병
LS 그룹	파운텍	x	x	x	해당	2011 매각
	LS 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x	x	x	해당	2011 매각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아이디티	x	x	x	해당없음	2008 매각
	아시아나애바카스	x	x	x	해당없음	2009 매각
	금호개발상사	x	x	x	해당없음	2009 매각
	아시아나에어포트	x	x	x	해당없음	2007 매각
동부그룹	동부씨엔아이(동부디아이에스, 동부에프아이에스)	o	o	x	해당없음	
대림그룹	대림코퍼레이션	x	o	o	해당없음	내부거래 비중 30% 미만
	대림에이치앤엘	x	x	x	해당없음	2008 합병
	캠택	x	x	o	해당없음	
	대림아이앤에스	o	o	x	해당없음	

부영그룹	부영,부영환경산업,부강주 택관리	x	o	x	해당없음	
	부영엔터테인먼트	o	o	x	해당없음	
현대그룹	현대유엔아이	o	o	x	해당없음	
	현대투자네트워크	x	x	o	해당없음	
OCI 그룹	OCI 상사	x	o	x	해당없음	
	넥솔론	x	x	o	해당없음	
	이테크건설	x	x	x	해당없음	
	군장에너지	o	o	x	해당없음	
	쿼츠테크	x	x	x	해당없음	
현대백화 점그룹	한무쇼핑	x	x	x	해당없음	2010 매각
효성그룹	노틸러스효성	x	o	o	해당없음	
	신동진	o	o	x	해당없음	
	효성투자개발	x	x	o	해당없음	
동국제강 그룹	디케이에스앤드	x	x	x	해당	합병
	디케이유엔씨	x	x	x	해당	2011 매각
영풍그룹	엑스메텍	x	x	o	해당없음	
	영풍정밀	x	o	x	해당없음	
	케이지인터내셔널	x	x	x	해당	2013 합병
	서린상사	x	o	x	해당없음	
	서린정보기술	x	o	x	해당없음	
	영풍개발	o	o	x	해당없음	
미래에셋 그룹	미래에셋캐피탈	o	o	x	해당없음	
	미래에셋컨설팅	x	o	x	해당없음	
	미래에셋자산운용	x	x	x	해당없음	
코오롱그 룹	코오롱환경서비스	o	o	x	해당없음	
	코오롱이엔지니어링	x	x	x	해당없음	
	엠오디	o	o	x	해당없음	
	코오롱베니트	x	o	x	해당없음	
한진중공 업그룹						
KCC 그 룹	KCC 자원개발	o	o	o	해당없음	
	코리아오토글라스	x	x	o	해당없음	
한국타이 어	엠프론티어	o	o	o	해당없음	
	엠케이테크놀로지	o	o	o	해당없음	
	신양관광개발	o	o	x	해당없음	
태광그룹	티브로드홀딩스	o	o	o	해당없음	

	티알엠	x	x	x	해당	2013 합병
	구,티시스	x	x	x	해당	2013 합병
	티시스(구,동림관광개발)	o	o	o	해당없음	
	메르뱅,바인하임,에스티임	o	o	x	해당없음	
	세광패션	o	o	o	해당없음	
	성광산업	x	x	x	해당	2011 합병
	서한물산	o	o	x	해당없음	
	템테크,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x	x	x	해당	2013 해산
대성그룹	서울도시산업	x	x	x	해당	2013 합병
	에스씨지솔루션즈	o	o	x	해당없음	
	대성정보시스템,에스필	x	x	x	해당	합병
	에이원	o	o	x	해당없음	
	한국인터넷빌링	x	x	o	해당없음	
	대성엘앤에이	x	x	x	해당없음	
	알앤알건설	x	x	x	해당	2011 분할
	대성이앤씨	x	x	o	해당없음	
	대성투자자문	o	o	x	해당없음	
현대산업 개발그룹	아이콘트롤스	o	o	x	해당없음	